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평가는 1994 년도 GATT 제 7 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출자란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를 말한다. 평가는 1994 년도 GATT 제 7 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재료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¹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제 3.2 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¹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 라 한다)과 인정가치포함비율(이하 “QVC” 라 한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RVC 는 상품이 어느 한도에서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지 표시하는 백분율이다.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 3.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 3.3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제1항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딛사냥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마.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

양생물.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²에 따라 그러한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보호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아.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³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이 경우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차.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카.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 3.4 조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² “국제법” 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³ “국제법” 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제 3.2 조제 1 항다호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집적법

$$\text{RVC 또는 Q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 (VOM)}}{\text{본선인도가격 (FOB)}} \times 100\%$$

원산지재료가치(VOM)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의 가치를 포함한다.

나. 공제법

$$\text{RVC 또는 Q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 (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 (VNM)}}{\text{본선인도가격 (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2)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이다.

제 3.5 조

특정상품의 취급

1. 특정상품의 취급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 의 제 6 조와 제 6 조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2009 년 2 월

27 일자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 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그 교환각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 1 항에 따른 취급의 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교환각서에 첨부된 상품 목록이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 년 내에 상기 언급된 상품 목록을 추가 교환각서를 통하여 수정 또는 개정한다.

제 3.6 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 3.7 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단순한⁴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⁴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⁵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 아. 단순한⁶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 카.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⁷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단순한⁸ 시험 또는 측정, 또는

⁵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⁶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⁷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너. 동물의 도살⁹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제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 1 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제 3.8 조

중간재¹⁰

1. 원산지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2. 비원산지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 가. 그 이후에 생산된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그 비원산지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그리고
 - 나. 그 이후에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비원산지 제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를 고려한다.

제 3.9 조

직접운송

⁸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⁹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 내의 생산공정에만 적용된다.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 3 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이나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 2 항의 이행의 목적상, 양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 3.10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 1 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 3.11 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료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된다.

나. 가호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그 상품의 세번변경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제 3.12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양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 1 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3.13 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4 조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다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가. 각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제 3.15 조

원산지 증명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다음은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된다.

가. 제3.16조에 언급된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그리고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 3.19 조에 명시된 경우 제 2 항에 언급된 서류 없이도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 년 내에 제 2 항다호에 언급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를 이행한다.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 10 년까지 더욱 긴 연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제4.12조(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언급된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하여 규정 및 서식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후 제2항나호 및 제2항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을 이행할 수 있다.
7. 수출 당사국이 이 항을 이행한다고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후에만 제6항이 적용된다.
8.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제 3.16 조

원산지 증명서¹¹

1.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으로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¹¹ 원산지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제 3.25 조에 따라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에 교환되는 경우,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 각주는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저해하지 않는다.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종이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전자 원산지 증명서

3. 종이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는,

가. A4 크기의 용지 그리고 부속서 3-나-1에 규정된 첨부 서식이 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3-나-2에 규정된 첨부 서식을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한 장의 원본과 두 장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다.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라. 인쇄본¹²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4. 전자 원산지 증명서란 제3.25조에 언급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말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¹³ 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¹² “인쇄본”이란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 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며, 발급 기관,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인쇄된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

¹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달력상의 7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6.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7.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어야 한다. 이 등본에는 부속서 3-나-1의 제4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이 등본에는 부속서 3-나-1의 제12란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날짜가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내에 발급된다.

8.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 기관에 의하여 인증받는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기관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한다.

제 3.17 조

발급 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 이름과 인장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의 이름,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해당 목록의 모든 변경은 신속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참조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상품명, 수량, 발급일 및 수출자의 이름과 같은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국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4. 발급 기관은 각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최선의 자격과 능력으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되고,

나. 상품의 원산지가 이 장에 합치되며,

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그 밖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명서류와 일치하고,

라.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수량 및 종류가 명시된 대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합하며, 그리고

마.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연속적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제 3.18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서면 진술서를 세관신고 시 작성할 것

나.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적시할 것

다. 가호에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3.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공할 것, 그리고

마. 수입자가 가호의 신고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서류를 정정하고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날 후 1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 및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신청된 특혜관세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신청 의사를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19 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및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0 조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된 날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에 관한 서류를 상품의 수입일부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제3.17조에서 언급된 발급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과 증명을 위하여 요구되는 뒷받침하는 정보를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발급 기관이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3.21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수입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동일한 원산지 증명으로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제 3.22 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 3.23 조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¹⁴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 사후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 검증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을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나. 사후 검증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은 그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그 요청 접수 후 2개월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추가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 후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 제

¹⁴ 한국의 경우, 원산지 검증의 발급 기관은 한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 당국을 지칭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산지 검증의 발급 기관은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 1 항에 따른 사후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 3 항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 기관
-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관세 당국, 그리고
-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서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 당국의 이름
-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3)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4)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다. 수입 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해당 원산지 증명에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 기관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증방문은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와 관련 발급 기관에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6.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제 5 항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7.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동안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최종 서면 결정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그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부터 30 일 내에 관련 발급 기관에 통지된다.

8. 최초의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 개월의 기간 내에, 실제 방문과 그러한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제 5 항의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관련 발급 기관에 통보된다. 검증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제 1 항라호가 적용된다.

제 3.24 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 없이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제3.9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나. 원산지 증명이 처음에 부정하게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작성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2. 검증 절차 동안,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0조 또는 제3.23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제3.26조

통과 및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3.9조의 직접운송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지 않았던 경우

다만, 그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 일 내에 제 3.18 조에 따라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부속서 3-나-1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2사본/제3사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참조번호: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KI-CEPA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3.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선적항: 하역항:		4. 비고:			
5. 품목 번호	6. 상품명(포장의 수량 및 종류 그 리고 번호를 포 함합니다)	7. 통일 상 품명 및 부호체계 (6단위)	8. 원산지 기준	9.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치수 및 본선인도가 격(FOB) 가치(RVC/QVC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날짜
11.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 며,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인도 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수입국)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장소 및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		

뒷면 주해

1.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KICEP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2. 조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위에 명시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1) 수입 당사국에서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제3.9조(직접운송)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 3)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참조번호: 발급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3란: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4란: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서 비고는 다음과 같다.

조건	비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한다.	“비당사국 송장” 및 송장을 발급하는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명시한다.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다.	“소급 발급”
진정 등본이 발급된다.	“진정 등본”

제5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6란: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의 수량 및 종류 그리고 번호를 명시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포장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한다.

제7란: 제6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 위까지 기재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제8란: 수출자는 제8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에 기재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 8 란에 기입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p>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 변경 - 역내 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 세번 변경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 그 밖의 사항 	<p>“CC” / “CTH” / “CTSH”</p> <p>“RVC/QVC40”</p> <p>“CC” / “CTH” / “CTSH” 또는 “RVC/QVC40”</p> <p>“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40”</p>
<p>라. 제3.5조(특정상품의 취급)를 충족하는 상품</p>	<p>“제3.5조”</p>

상품이 역내 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역내 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 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 를 기재한다.

제9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난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가 사용될 수 있다.

제10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난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난에 명시된다.

제11란: 이 난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2란: 이 난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발급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주: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부속서 3-나-2
원산지 증명서(추가면)

원본(제2사본/제3사본)

참조번호

5. 품목 번호	6. 상품명(포장의 수량 및 종류 그 리고 번호를 포 함합니다)	7. 통일 상 품명 및 부 호체계(6단 위)	8. 원산지 기준	9.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치수 및 본선인도가격 (FOB) 가치 (RVC/QVC기준이 사 용된 경우에만 기재합 니다)	10. 송장 번호 및 날짜
<p>11. 수출자 신고:</p> <p>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p> <p style="text-align: center;">..... (국가)</p> <p>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수입국)</p> <p style="text-align: center;">.....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p>			<p>12. 증명:</p> <p>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장소 및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p>		